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.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제41회 본회의 제2차 제20호

제출년월일 : 1996. 1. 10

(의회운영위원회)

1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 ('95. 12. 29)과 지방자치법시행령 ('95. 12. 30)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 지급액을 조정하고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3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)
-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조정
[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참조]

3. 참고사항

-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사항
-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.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.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관광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제1항 [별표 1]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 (제8조 제1항 관련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 통 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
의 장 부의장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6,500	37,500	25,000
의 원	2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6,500	18,000	18,000

1.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

식비만을 지급한다.

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
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
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신.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 (회의수당 지급) ① 의원이 회기 에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 한다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 당을 지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<u><단서조항 신설></u></p>	<p>제3조 (회의수당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]	[별표 1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	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단위 : 원)	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철도 운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박 운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공 운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동차 운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장 부의장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 정액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 정액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액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액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 정액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 정액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액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액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의장 부의장	1등급 정액	2등 정액	정액	정액	의원	2등급 정액	2등 정액	정액	정액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철도 운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박 운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공 운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동차 운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장 부의장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의장 부의장	---	---	---	---	의원	---	---	---	---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장 부의장	1등급 정액	2등 정액	정액	정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2등급 정액	2등 정액	정액	정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장 부의장	---	---	---	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---	---	---	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지 교통비 (1일당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박비 (1일당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식비 (1일당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5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7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,00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,5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,2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5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6,500	20,700	11,000	6,500	16,200	10,500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지 교통비 (1일당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숙박비 (1일당)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식비 (1일당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,5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,00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,000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,0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---	37,500	25,000	---	18,000	18,000												
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,500	20,700	1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,500	16,200	10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	37,5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	18,000	1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
<p>1. 화순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</p> <p>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1. -----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審查結果報告書

—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第十一回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第十二回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議會運營委員會

本會議會審查結果報告書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.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회운영위원회)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의회운영위원회

나. 제출일자 : '96. 1. 10

다. 회부일자 : '96. 1. 10

라. 상정일자 : 제 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'96. 1. 16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운영위원회 간사 양동복위원

나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 ('95. 12. 29)과 지방자치법시행령 ('95. 12. 30)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지급액을 조정하고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회의수당을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3조 제1항 단서규정 신설)

-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조정
[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참조]

3. 검토보고 요지

-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(의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)이 대통령 제14857호 및 14877호로 '95. 12. 30 개정 공포됨에 따라
-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
-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『 원 안 가 결 』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